

청주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2가합526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노동영

변론 종결2024. 11. 6.

판결 선고2024. 12. 18.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부동산 및 등록된 골재선별·파쇄업권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각 양도계약을 431,303,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1,303,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31,303,77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골재운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6. 27.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대여한 채권자이며, 피고는 골재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9. 2. 15.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 경위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5. 9. 2. 450,000,000원, 2015. 12. 10. 230,000,000원, 2016. 2. 5. 126,500,000원, 합계 806,500,000원을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지인인 D와 E는 원고의 소개로 2015. 4. 27. 이 사건 회사에 각 250,000,000원씩 합계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다음, 2016. 5. 30.부터 2017. 5. 4.까지 사이에 각 230,000,000원씩 합계 4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7. 4. 29.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F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등기이사이며, 실질적인 경영자로 2015년 4월부터 '을'(원고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의 지속적인 투자로 C를 운영하였으나, 갑과 을은 상호 원만한 회사 운영을 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투자한 을의 투자금 총 12억 7,000만 원(D 투자비 5억 원 포함)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이 계약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증인 '병'(G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은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 등에 관하여 적극 증언하며 협조한다.

1. 을은 이 계약서상 D 투자분(5억 원)까지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며, 이 계약이 성실히 이루어졌을 경우 위 총 투자금 12억 7,000만 원 중 7억 원에 대하여만 채권을 변제받기로 한다.
2. 갑은 위 변제대금 중 1억 원은 2017년 4월 29.일 18시까지 을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3. 갑은 잔금 중 1억 원은 2017년 5월 4.일 18시까지 을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4. 갑은 이후 잔금 중 1억 원은 2017년 5월 31.일 18시까지 을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5. 나머지 변제대금 4억 원에 대하여 매월 27일 18시까지 500만 원씩 을의 명의 통장으로 상환하며 이와 더불어 2018년 5월 31.일까지 매월 상환금액 포함 1억 원을 을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6. 이후 잔여 변제대금 3억 원에 대하여 매월 27일 18시까지 500만 원씩 을의 명의 통장으로 상환하며 이와 더불어 2019년 5월 31.일까지 매월 상환금액 포함 1억 원을 을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7. 위 약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잔여 변제대금 2억 원에 대하여는 C이 운영되는 기간까지 매월 25일까지 500만 원씩 을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중략)

10. C이 판권을 넘길 경우 을과 합의하여야 하며, 을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판권계약은 무효로 한다.

4)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5. 4.부터 2019. 9.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금 39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나머지 채무는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 양도 경위

-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및 위 D, E가 대여한 금원으로 골재채취업 등록에 필요한 선별시설, 로우더, 굴삭기 등을 구매하여 2017. 9. 22. 청주시장에게 골재선별·파쇄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등록을 하고, 2017. 10. 12. 변경신고를 마친 후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 11. 9.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부동산, 이 사건 사업권(별지 목록 기재 물건, 부동산과 이 사건 사업권을 총칭하여 '이 사건 사업권 등'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1) 하였다.

3) 이 사건의 감정인 H은 2020. 11. 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사업권 등의 가치를 합계 431,303,770원(= 부동산 27,868,770원 + 물건 및 사업권 403,435,000원)으로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875,000,000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 채무액 1,270,000,000원 - 이 사건 회사의 변제액 39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는데,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사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이 사건 사업권 등의 가치인 431,303,77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약 246,141,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 대한 골재운반 장비사용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87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등 참조).

2)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1. 9.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87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87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F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17. 5. 4.부터 2019. 9. 10.까지 합계 395,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거액을 이체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87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회사가 2020. 11. 9.경 원고에 대하여 87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2020. 11. 9.경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제외한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20. 11. 9.경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사업권 등의 가치는 합계 431,303,770원이어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액 합계 87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2020. 11. 9.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사업권 등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약 246,141,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 대한 골재운반 장비사용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가 금전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양수한 후 피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사업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자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결국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은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 회사가 2022. 12. 5. 해산하여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이전받을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인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사업권 등의 가치 중 적은 금액인 431,303,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부동산 및 등록된 골재선별·파쇄업권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각 양도계약은 431,303,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431,303,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위 조항 본문에 규정된 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에 정한 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지현

판사이인창

판사황정환

별지

1) 다만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먼저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